

#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생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26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6월 9일

발 의 자 : 김생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승로, 김정태, 최판술  
성백진, 김동율, 조규영  
문형주, 문상모, 장홍순  
김종욱, 유찬중, 양준욱  
김영한, 우형찬 의원(14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감면 대상자 중 노인의 경우 「노인복지법」의 규정에 따른 연령으로 그 연령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, 동 수강료 감면 대상자에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새롭게 추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수강료 감면 대상자 중 노인의 경우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자로 함(안 제9조제1항제4호).
- 나. 수강료 감면 대상자에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을 새롭게 추가함(안 제9조제1항제5호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유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4호 중 “만 60세 이상의 자” 를 “「노인복지법」  
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자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  
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는 제6호로 한다.

5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<p>제9조(수강료 감면) ①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만 60세 이상의 자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10px 0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수강료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의한 <u>경로우대자</u></p> <p>5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의한 <u>다문화가족</u>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**1. 비용발생 요인**

개정안은 수강료 감면 대상자와 관련하여 노인의 경우 「노인복지법」의 규정에 따른 경로우대자로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함.

**3. 미첨부 사유**

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**4. 작성자**

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의원(3783-1701)